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586085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근진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김문수

변론 종결2020. 8. 20.

판결 선고2020.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주식질권설정계약 체결

-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그 대표이사인 C은 2012. 12. 24. 액면금 2,500,000,000원, 수취인 E, 지급기일 2013. 6. 24., 발행일 2012. 12. 24., 발행인 주식회사 D 및 C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하였다.
- 2)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2015. 11. 13. 및 2015. 11. 20.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어음금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3,694,520,547원을 지급하였다.
- 3) C은 2017. 8. 25. 피고와 '피고가 C을 대신하여 F에 지급한 위 3,694,520,547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이 소유하는 주식회사 G(2019. 10. 15. '주식회사 H'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의 주식 54,08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양수도계약 체결 등

- 1) 원고는 2018. 1. 5. 피고로부터 '피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3,694,520,547원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 권한(이자,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주식에 설정된 질권을 포함한 일체의 담보권 등 포함)과 계약상 지위'를 대금 3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27억 원은 관련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인 2018. 1. 24.에 지급하되,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양도대상자산"이라 함은 피고가 C에 대하여 보유하는 구상금채권 3,694,520,547원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 권한(이자, 지연손해금 및 주식질권설정계약에 따른 질권을 포함한 일체의

담보권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및 계약상 지위를 총칭하여 말한다.

제2조 양도대상자산의 적격

피고는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양도대상자산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한다.

3. 담보계약서 기타 관련 계약서에 의거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가 양도대상자산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것

제3조 양도대상자산의 양도 및 양수도대금의 지급 등

(3) 양도대상자산의 양수도대금은 30억 원으로 하며, 원고는 이 계약의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3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광주지방법원 2017나13310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사건(이하 "관련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이 계약 체결일 현재 판결선고기일로 예정되어 있는 2018. 1. 24.을 말하되, 선고기일의 연기 등으로 인하여 선고기일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선고일을 말한다)에 잔금 27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단, 잔금의 경우 원고가 이 계약서 제1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잔금 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이에 응하기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1) 피고는 해당 양도대상자산의 양수인인 원고가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단, 피고는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몰취되고, 원고가 이 계약 해제 전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계약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관련

(3) 피고는 원고가 C과 이 사건 주식의 양수를 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원만히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하기로 한다.

3) 원고는 2018. 1. 24. 피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2018. 2. 24.까지 유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였으나, 원고는 2018. 2. 24.까지 피고에게 잔금 2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G 소유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개시

G 소유의 여수시 I 모지 364m² 등 42필지에 관하여 2018.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J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G 소유의 토지에 호텔을 건축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16조). 그런데 C이 주식양수대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G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 등 이 사건 계약 체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후발적 위험부담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C이 아니라 K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3억 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가)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양수도대금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인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관한 민법 제537조는 이와 같이 대가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에서 어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내지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한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채권 등 양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 반대급부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양수도대금 중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계약 제16조에서 정한 피고의 협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취지로 선행하더라도, 이러한 협조의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로서 원고의 양수도대금 지급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이행불능에 민법 제537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협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 위반 주장1)에 대하여 가)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C은 2016. 7. 11. G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합487호로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K은 자신이 E, L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G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7가합10085호로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17. 7. 12. 'G은 C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C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C의 청구를 인용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 M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G이

광주고등법원 2017나13310호로, M이 같은 법원 2017나13327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 24. G와 M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이에 G이 대법원 2018다218441호로, M이 대법원 2018다218458호로 각 상고하였으나, G와 M의 각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C이 아니라 M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액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몰취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나)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으나,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는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3억 원으로 크고,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으며,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외부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전체 양수도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석근

판사김경운

판사김현영

1) 원고는 2020. 7. 8.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C이 아니라 K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이에 관한 주장을 보충한 바 없다. 이에 원고의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취지로 설회하여 살펴본다.